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의 범위 확대〉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66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의 범위 확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

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 3호).

Ⅲ. 검토의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의 범위 확대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로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신고) ①·② (생략)	제7조(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3. ----- ----- ----- ----- 「외국환거래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②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에 한정), ③ 이 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 포함), ④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3항).¹⁾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 ③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이란,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을 의미함(법 시행령 제10조의12)2).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③ 법 제7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삭제 <2019. 6. 25.>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와 처벌 과정에서 금융관련법률이 아닌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은 경우가 있음³⁾에도, 현행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⁴⁾

-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 37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 <2022. 8. 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3)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대표이사과 사내이사 등이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상 표시하게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 232조의2를 적용하여 사전자기기록위작죄를 적용하였고, 임의로 만든 계정을 통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죄와 「형법」상 사전자기기록위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행위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고, 올해 9월 이후 기존 가상자산사업자(37개사)중 대부분인 33개사에 대한 갱신신고 시점이 도래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4.7월 말 기준)>

구 분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수리일
가 상 자 산 거 래 업 자 (27)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2021.10.06.
	코빗	주식회사 코빗	2021.10.20.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2021.11.25.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2021.12.02.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2021.12.01.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2021.11.29.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2021.12.09.
	BTX	차일들리 주식회사	2021.12.09.
	프로비트	오션스 주식회사	2021.12.09.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2021.12.21.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2021.12.21.
	코어다스	(주)코어다스	2021.12.17.
	플랫폼익스체인지	주식회사 플랫폼이엑스	2021.12.23.
	한빗코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	2021.12.23.

4) 파이낸셜투데이, 2021.2.23., “‘형법 위반은 괜찮아’ 특금법 개정안 규제 공백 논란”,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67>, 2024.7.24.

구 분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수리일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2021.12.23.
	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	2021.12.23.
	오케이비트(OK-BIT)	주식회사 포리스닥스코리아 리미티드	2021.12.30.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처스	2021.12.30.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2021.12.30.
	코인엔코인	(주)코엔코코리아	2021.12.30.
	보라비트	주식회사 뱅코	2021.12.30.
	캐서레스트	주식회사 뉴링크	2022.01.04.
	텐앤텐	(주)텐앤텐	2022.01.04.
	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2022.01.04.
	오아시스거래소	(주)가디언홀딩스	2022.02.10.
	큐비트	큐비트(주)	2022.02.10.
	코인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2022.09.01.
기타 지갑 보관· 관리 업자 (10)	코다(KODA)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2021.12.17.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2021.12.17.
	오하이월렛	(주)헥슬란트	2021.12.30.
	마이키피월렛	(주)씨피랩스	2022.01.04.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2022.01.07.
	카르도	(주)카르도	2022.02.10.
	델리오	(주)델리오	2022.02.12.
	페이코인(Paycoin)	PayProtocol AG	2022.04.22.
	베이직리서치	주식회사 마인드소프트	2022.06.27.
	인피닛블록	(주)인피닛블록	2023.08.07.

(자료: 금융위원회)

□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의 범위에 「형법」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형법」은 범죄 종류와 범위가 넓어 자금세탁행위 또는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적은 범죄⁵⁾도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5)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언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제3호⁶⁾는 결격사유 규정 시 대상이 되는 자격,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⁷⁾은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등 일부 범죄 중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의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자⁸⁾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
- 6)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8. (생략)
-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 타 금융업의 인허가 심사 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력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9)는

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별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제5조 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세법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 및 자금세탁행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고, 「형법」과 기타 법률에 따른 위반전력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거 법률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고 불수리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8